

제 881 호
1981.12.30

발행인 : 서울특별시 박 영 수
편집 : 공 보 관 이 총 우
전화 725-76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00

시 보

차 례

◎ 조	제 1571 호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	3
◎ 규	제 1948 호 : 서울특별시고공품질검사규칙 폐지규칙	3
	제 1949 호 :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	3
	제 1950 호 : 서울특별시한강택지대단지조정위원회규칙 폐지규칙	5
	제 1951 호 : 서울특별시자동차운송사업육성자금운용규칙중개정규칙	6
	제 1952 호 : 서울특별시건설음택지조성사업지구지적정리위원회규칙중 개정규칙	6
	제 1953 호 : 서울특별시당숙직로지급규칙 폐지규칙	6
	제 1954 호 : 서울특별시시세체납처분에의한압축재산처리기칙중개정규칙	7

<이면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250

제 1955 호 :	서울특별시탈세정보교부금지규칙중개정규칙	7
제 1956 호 :	서울특별시관인규칙	7
제 1957 호 :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심사시행규칙중개정규칙	10

◎ 시

제 45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11
제 457 호 :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허가 (변경)	12
제 458 호 :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 계획변경인가	13
제 459 호 :	금문로특정가구정비지구 (관광공사분구) 정비사업 시행허가변경	13

◎ 공 고

제 396 호 :	1981 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심사결과공고	13
제 397 호 :	자동차말소등록시폐차증명서원부제도실시공고	14
제 398 호 :	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17
제 399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17
제 400 호 :	시공업책지정취소공고	17
제 401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공고	18
제 403 호 :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완료공고	18
제 404 호 :	도시계획사업 (지하도) 완료공고	19
제 405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완료공고	19
제 95 호 (강서구) :	공인개각공고	20

◎ 사 령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구분서 ㉔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71 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위원 7 인"을 "위원 2 인"으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재무과장, 관재과장"을 삭제하고 "사회체육과장"을 "사회체육과장"으로 한다.

제 6 조 제 2 항중 "관재과"를 "재무과"로 한다.

부 칙 (8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고공품질검사규칙폐기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㉔

◎ 서울특별시규칙 제 1948 호

서울특별시고공품질검사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고공품질검사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㉔

◎ 서울특별시규칙 제 1949 호

서울특별시법률고문운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중 다

<p>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서행일) 이 규칙은 1982.1.1 부터 시행한다.</p>	<p>(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진행된 사건 중 이 규칙 시행후 승소한 소송사건의 사례금은 이 규칙에 의한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p>
(별표) 소송 위임료 지급 기준	

구분 소송별	내용 (소송물가액)	지급 기준액	
		착수금	사례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30,000 원 (단경매는 50,000 원)	1) 90% 이상 승소의 경우는 착수금의 150% 2) 60% 이상의 승소의 경우는 착수금과 동일 3) 소취하 (상불취하 포함) 의 경우는 착수금의 반액 (단 조건부취하는 제외)
	2. 경이 또는 동일성사건	50,000 원	
	3. 전항이외의 본안사건		
	1) 50만원이하	50,000 원	
	2) 50만원이상	70,000 원	
	3) 100	90,000 원	
	4) 300	120,000 원	
	5) 500	150,000 원	
	6) 800	180,000 원	
	7) 1,000	200,000 원	
	8) 1,500	250,000 원	
	9) 2,000	300,000 원	
	10) 3,000	500,000 원	
11) 5,000	700,000 원		
12) 1억원이상	1,000,000 원		
13) 중요사건 (승패에 따라 당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사건)	500,000 원 ~ 1,000,000 원		
	1. 신청사건	30,000 원	상 동

구분 소송별	지 급 기 준		
	내용 (소송물가액)	기 준 액	
		착 수 금	사 례 금
행정소송	2. 각심본안사건 3. 중요사건 (승피액 따라 당시의 행·제정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사건)	100,000 원 (단 소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때 미사소송과 같음.)	
공 통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비 5. 출장 및 여비 6. 기타실비	실 액 · 실액 (단 현장검증시 소송 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 원을 별도로 지급) 상 동 국내여비규정 (제1호해당) 실 액	
<p>서울특별시 한강택지 대단지 조정위원회 규칙 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㉞</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950 호</p> <p>서울특별시 한강택지 대단지 조정위원회 규칙 폐지 규칙</p> <p>서울특별시 한강택지 대단지 조</p>		<p>정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p> <p>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 육성자금융자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㉞</p>	

◎ 서울특별시규칙제 1951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운송사업육성자금
용자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송사업 육성자
금 용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 5 조 제 3 항중 "제 1 부시장"은
"부시장"으로 "관광운수국장"은
"교통국장"으로 하고 "기획관리관"
은 삭제한다.

제 8 조 제 1 항중 "운수제 1 과장"을
"운수 1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건물택지조성사업지구
지적정리위원회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

◎ 서울특별시규칙제 1952 호

서울특별시건물택지조성사업지구
지적정리위원회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건물택지 조성사업지구

지적정리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구성) ㉔위원장은 재무국장
이 되며 위원은 예산담당관, 관제
과장, 지적과장, 도시계획과장, 재개발
과장, 지적과 지적 1 계장 및 성
북구청의 재무국장과 재무과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당숙직로 지급규칙 폐
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

◎ 서울특별시규칙제 1953 호

서울특별시당숙직로지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당숙직로 지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
행한다.

서울특별시 시세계 남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1954 호

서울특별시시세계 남처분에 의한압류재산
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시세계 남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6 조중 "국세징수법 제 96 조"를
"국세징수법 제 85 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
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1955 호

서울특별시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규
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2 항중 "구청장, 출장소장"
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서울특별시 관인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1981.12.31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㉔

◎서울특별시규칙제 1956 호

서울특별시관인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관인규칙
에 의거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기관장의
보조기관과 각종 위원회의 관인을
포함한다)의 비치 및 관수와 기
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인은 시민과에, 구청장의 관인은 시민봉사실에, 사업소장 및 기타기관의 장의 관인은 문서취급부서에 비치하고 각각 비치부서의 장이 관수한다. 다만,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의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총괄공무원이 관수한다.

②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관인날인 건수의 파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별도비치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관인교부기관으로 부터 별도로 교부 받을 수 있다.

제 3 조 (관인의 교부 및 재교부)

관인을 교부 또는 분실, 마멸등으로 재교부받교자 할 때에는 별표 제 1 호서식으로 그 직근상급기관에 교부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폐기) 기관의 폐지 및 관인의 마멸등으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부기관에 비치된 관인대장에 폐기관인을 날인한 후 소각하고, 교부기관에 별표 2 호 서식에 의한 폐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인대장) ① 관인교부기관은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관인을 신청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관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조 (공고) 관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인의 사고보고) 관인관수자는 관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표 제 3 호서식에 의한 관인사고 보고서를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관인의 보관) 관인은 근무시간후에 관인관수자가 관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한다.

제 9 조 (기타) 회계관계 공무원직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서울특별시 관인관수 및 취급규정, 서울특별시 구관인관수규정,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관인관수 및 취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제 1 호서식)		<u>관인신조 (개각) 신청서</u>	
수 신 :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이 유			
세책·규격			
관 인 명			
새 긴 날			
새 긴 사람	주소	성 명	
재 료			
사 용 개 시	년 월 일		
비 치 처 및 관 수 자			
관인의인영			
(백상지 190 mm X 268 mm)			
(별표 제 2 호서식)		<u>관인 폐기 보고서</u>	
수 신 :		년 월 일	
		보고기관명	
관 인 명			
사 용 개 시	년 월 일		
폐 기	년 월 일		
폐기 사유			
소 작	년 월 일		
소 작 당 시 인 영			
비 고			
(백상지 190 mm X 268 mm)			

(별표 제 3 호서식) <p style="text-align: center;"><u>관인 사고 보고서</u></p> 수 신 : 년 월 일 <p style="text-align: right;">보고기관명 ①</p>	
1. 사고인명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달	
5. 기 타	
(190 mm X 268 mm)	
서울특별시 식품위생적부 심사시행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1.12.31 서울특 시장 박 영 수 ① ◎ 서울특별시규칙제 1957 호 서울특별시식품위생적부심사 시행 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식품위생적부심사 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최초생산품에 대한" 다	음에 "완전포장된(시판품) 검체로 서"를 삽입한다. 제 3 조중 "위생연구소"를 "종합기 술시험연구소"로 한다. 제 7 조중 "검체와 함께"를 삭제한 다. 제 10 조중 "최소 3개월간"을 "최소 60일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6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4 호 (80. 6.30)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12.30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종암동 산 2-10 외 4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종암중학교 (신설)

다. 사업의 종류 및 면적 :
규모 : 지상 1층 - 지상 4층 (연면적 2,785㎡)

면적 : 14,254㎡

나. 사업의 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당초 : 80.8.24 부터 82.12.30
2) 변경 : 80.8.24 부터 82.12.30

바. 위치 및 계획정면도 : 별첨 (성략)

사. 공사설계도서 : 별첨 (생략)

아.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

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별첨토지조서.

아.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전의 권리명세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종암중학교	성북구종암동	산 2-10	임	17,078㎡	중 1,445㎡
"	"	" 2-14	"	3,764 "	중 3,764 "
"	"	" 2-10	"	8,685 "	중 8,660 "
"	"	" 32-6	대	1,289 "	중 96 "
"	"	" 32-3	"	289 "	중 289 "
계					14,254

다. 토지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성명
종암중학교	성북구종암동	산 2-10	임	1,445 ㎡	태평로2가 305 중앙산업(주)
"	"	산 2-14	"	3,764 "	"
"	"	산 2-10	"	8,660 "	"
"	"	산 32-6	대	96 "	안암동 5가 1-2 학교법인 교대 중앙학원
"	"	산 32-3	"	289 "	"
계				14,254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7 호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1 호 (80.2.10)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 호 (79.12.10)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1.12.30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기 : 성북구 돈암동 184-127 외 18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한성여중고 학생실습실 (실험) 신축부지

다. 면적 및 규모 : 2,970 ㎡

라. 시행자주소, 성명 : 성북구 안암동 2가 339 번지 학교법인 한성학원이사장 김의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전 : 80.3.15-81.12.30

변경 : 80.3.15-82.4.30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사. 공사실제도면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8 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실시제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05 호 (78. 8.11) 로 실시계획인가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한일은행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기간

당초 : 1978.7-1981.12.31

변경 : 1978.7-1982. 6.30

(6개월간 연장)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59 호

금문도특정가구정비지구 (관광공사분구)
정비사업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0 호 (80.

9.24) 로 사업시행허가된 금문도특정가구 정비지구 (관광공사분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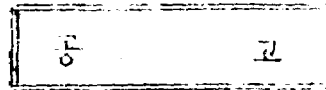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기간

당초 : 80.9.24-81.12.31

변경 : 80.9.24-82. 6.30

(6개월분간 연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96 호

1981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
제안심사결과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원개안규칙 제 23 조에 의거 1981년도 제안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 장

포상등급	접수번호	제안 제목	제안자
장려상	29	삼각점영구조표설치	강서구 도시정비과 지방지적기사 고한기
노력상	21	가옥대장기재용어개선	동작구 도시정비과 지방지적기사 박수남 동작구 시민봉사실 김서기 김창환
노력상	23	도로하천 공유수면 점용권리 의무양도 양수허가처리절차개선	건설관리과 정서기 백조중
노력상	40	재산평가조서 업무처리 요령개선	은평구 수도관리과 지방행정주사 박전기
노력상	41	호적제신고서의 인구 동태 사항난분리	성북구 시민봉사실 지방행정사무관 윤정로

◎ 서울특별시 공고제 397 호

자동차말소등록시 폐차증명서
첨부제도 실시 공고

자동차말소등록시 폐차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첨부등록 제도확함에 따라 시행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981.12.30.

서울특별시 장

아 래

k. 자동차말소절차

자동차소유자는 차체를 지정된 폐차장에 인도하고 폐차장에서 폐차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호표, 검사증과 같이 폐차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말소신청한다.

2. 폐차증명서 첨부대상

- 등록자동차의 멸실해체시
- 용도를 폐지한때 (자동차로서 사용할 수 없을 때)
- 차대가 신규등록시의 차대와 상이한때
- 차명 또는 주행

거리초과시

3. 지정 폐차장

위치 : 구로구 구로동 473-3

성명 : 정 문 원

4. 폐차제가격 (별첨)

5. 시행일 : 1982. 1. 10.

(별표 1) 배차체가격							
가. 차종별 대당배차체가격				(부가가치세불포함)			
구분	기준 중량 (kg)	배차장 인도기 기준 (원)	시내전 인기준 (원)	구분	기준 중량 (kg)	배차장 인도기 기준 (원)	시내전 인기준 (원)
제브리카	581	37,423	35,467	절형			
브리사	1,162	74,891	70,983	(국산형)	1,483	95,481	90,491
피아트 124	972	62,755	59,483	(외산형)	1,618	104,170	98,127
포나	861	55,415	52,519	시내버스(8톤)	7,574	467,263	455,382
브리사 II	832	53,653	50,353	" (10 ")	7,964	484,810	478,800
카미나	941	60,585	57,120	시외버스	10,594	644,862	636,910
카라반	989	63,830	60,503	전세 및 관광	11,018	670,598	662,335
코로나	873	56,130	53,194	고속버스	11,450	597,175	638,535
뉴코티나	896	57,813	54,799	기타			
뉴코티나마크 IV	991	63,953	60,620	(16 인이하)	1,706	103,895	102,516
" V	1,277	82,249	77,963	(25 ")	3,388	236,627	233,711
시보레	950	61,194	57,996	(40 ")	7,317	445,422	439,934
크라उन	1,157	74,592	70,700	(50 ")	7,429	452,114	446,542
레코드	1,099	70,840	67,142	(51 인이상)	7,654	467,641	461,975
로얄 D	1,537	98,982	93,811	소형화물(픽업)	642	52,941	51,380
루 조	1,354	87,258	82,704	카 고			
포드 20 m	1,123	72,298	68,519	(1 톤이하)	1,795	112,739	110,476
그라나다	1,358	87,514	82,944	(2.5 ")	2,247	141,030	138,170
제미니	921	59,370	56,272	(3 ")	2,419	151,799	148,750
베콘 (기타)	874	56,191	56,252	(4.5 ")	3,405	213,514	207,222
외산				(5 ")	3,703	237,264	232,495
(2,000CC이상)	1,276	114,469	108,493	(7 ")	4,548	285,337	279,604
(1,500CC ")	1,305	83,952	79,562	(8 ")	5,777	362,366	355,084
(1,000CC ")	1,128	72,602	68,807	(10 ")	7,898	495,260	466,305
(1,000CC미만)	720	46,466	44,043	(11 ")	8,630	544,296	533,355

구분	기준 중량 (kg)	폐차장 인도기 준(원)	시내견 인기준 (원)	구분	기준 중량 (kg)	폐차장 인도기 준(원)	시내견 인기준 (원)
카 고				콘테이너(7톤)	5,162	261,069	258,338
(12톤이하)	9,230	578,921	567,287	데카(3톤)	2,931	183,928	182,006
(12톤이상)	9,552	598,943	586,903	"(5톤)	6,781	425,335	420,885
덤프		136,427		"(10톤이하)	8,573	537,667	532,041
(4톤이하)	2,175	136,427	133,685	"(20")	10,364	649,957	643,156
(5톤")	3,782	237,207	232,440	"(30")	12,156	762,231	754,254
트랙타				"(50")	13,947	874,521	866,368
(20톤이하)	7,286	456,897	452,115	"(51톤이상)	15,738	986,901	976,573
(30")	7,435	466,314	461,435	포크리프트			
(50")	7,502	470,442	465,519	(5톤)	5,280	331,067	327,602
(51톤이상)	7,829	491,016	485,878	(8")	8,448	529,739	524,195
트레일러				(10")	10,560	662,136	655,206
(20톤이상)	7,518	471,521	466,587	크레인카(10톤이상)	45,110	2,828,551	2,798,947
(30")	8,094	507,624	502,312	2륜차			
(40")	9,807	614,978	608,542	(85CC이상)	106	6,974	6,974
(50톤이상)	11,520	722,328	714,768	(251CC")	163	10,518	10,518

나. 폐차채 가격 (kg 당 기준)

(부가가치세 불포함)

차 종	폐차장 인도시	시내 견 인 시
승 용 차	kg 당 : 61.83 원	kg 당 : 58.50 원
트럭	" : 60.56 "	" : 59.35 "
버 스	" : 58.48 "	" : 57.75 "
기 타	" : 60.56 "	" : 59.35 "

◎ 서울특별시 공고제 398 호

K 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규정에 의거
K S 표시 정지처분한 바 있는 아래
제품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규정에 준하여
이를 공고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제 2259 호
허가일자 80.12.30
대표자 배 천 수
소재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2 가
275-23
규격번호 KSC8102
품 명 형광램프용 안정기
종류등급 저압울충진형 120V 10W
220V 10W
처분일자 81. 9.25
해제일자 81.12.26.

◎ 서울특별시 공고제 399 호

K S 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K S (한국공업규격

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
다.

1981.12.30.

서울특별시

허가번호 제 2083 호
허가일자 80. 5.29
제조업체 신광전기공업사
대표자 김 선 천
소재지 강서구 등촌동 312
규격번호 KSC7703
품 명 형광램프 소켓류
종류등급 글로우스타터소켓 1A 300V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K S 가격미달

◎ 서울특별시 공고제 400 호

시공업체지정취소공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열사
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동법 시행
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 유	조치	관계법규
동대문계 49호	한독설비	김용구	전농동 597-26	무단 폐업	지정 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조 1항

◎ 서울특별시 공고제 40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공고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영동 1 추가
지구, 김포지구 및 예술인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1조
및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구획정리 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하였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
하고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봉지는 하지 아니하고 본 공
고로 같음한다.

1981.12.31.
서울특별시장

- 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내역 -

지 구 명	인가면적	시 행 자	시 행 기 간		비고
			기 정	변 경	
영동 1 추가지구	869,815	서울특별시장	72.12.28	72.12.28	1년 연장
			81.12.31	82.12.31	
김포지구	4,706,314	"	68. 1.23	68. 1.23	"
			81.12.31	82.12.31	
예술인지구	17,289	예술인토지구 획정리조합	78. 4.22	78. 4.22	"
			81.12.31	82.12.31	

(도민생략)

◎ 서울특별시 공고제 403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 호 (81.

4.22) 호 도시계획사업 (운동장) 시
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 완
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 조 2 항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
10) 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12.30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일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운동상) 지하우수 신축공사
3. 사업기간: 81. 5.13 ~ 81.12.30
4. 사업규모: 건물1동(건축 연면적 60.03평)
5. 허가번호 및 일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7호(81. 4.22)
6.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한국마사회 대표 임지순
7. 준공도면: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404 호

도시계획사업(지하도)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호(81.6.11)로 도시계획사업(지하도)시행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 완료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2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79.12.10)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1.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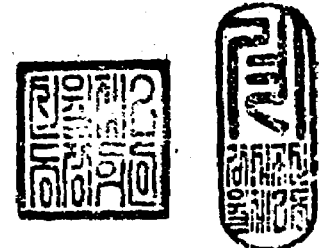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마장동 480의 1-590의 1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지하도)
3. 사업기간: 81. 6.18 ~ 81.12.30
4. 사업규모: (폭 6미터, 길이 10미터 면적 60평방미터)
5. 허가번호 및 일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12호(81.6.11)
6.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성동구청장
7. 준공도면: 별첨(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405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 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호(81.4.28)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 정류장)시행 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공사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57조 2항 및 건설부고시 제 463호(79.12.10)에 의거

<p>를 공모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1.12.30 서울특별시 장</p>	<p>1. 사용개시일자: 81.1.11 09:00</p> <p>2. 공인명: 화곡본동장의 직인 및 제인</p> <p>3. 공인의인명: 별첨</p> <p style="text-align: center;">81.12.3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p>
<p>1.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성수동 649-1</p> <p>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전용장)</p> <p>3. 사업기간: 81. 4.28 ~ 81.10.31</p> <p>4. 사업의 규모: 총면적 2,378 평방미터중 722 평방미터 (건물1동 276 평방미터)</p>	<p>인 영</p> 
<p>5. 허가번호 및 일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5 호 (81.4.28)</p> <p>6.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태진운수(주) 김창남</p> <p>7. 준공도면: 별첨 (생략)</p>	<p>공인명 신월제 2동장의 직인및제인</p>
<p>◎ 강서구공고제 9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공인개각공고</p> <p>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월 2동장의 직인 및 제인을 개각 하였기 동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사 령</p> <p>◎ 1981년 12월 22일자 행제 53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통국 지하철도과과장 정 광 훈 토 목 기 정</p> <p>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 style="text-align: right;">대 통 령</p>

22-22

제 881 호

시

보

1981.12.30

<p>의 약 과 양 동 주 지방행정사무관</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에 의거 정책에 처함.</p> <p>명 제 540 호</p> <p>마 조 구 정 연 문 지방건축기과</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p>	<p>수원기전과 조 정 호 지방토목기사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p> <p>승 로 구 신 감 칠 기방토목기원</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 의 규정에 의거 정책에 처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	---

정 정

○ 시보제 866 호 (칙제 1921 호) 제 3 조 관계발표 3

구 분	오	정	비 고
정책결정사항 (공동사항) 교도의 정책사항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4	좌 동 1	문책순위의 오기 정정